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93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박은정 · 황운하 · 김영환
차규근 · 김용민 · 박주민
서왕진 · 박지원 · 김준형
백승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원을 40명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용 문턱으로 젊은 인재의 신규 진입이 어렵고, 임기 제한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 저해되며 역량개발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수사경험의 축적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수사처수사관의 직급요건·최소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임용자격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임기 제한 규정 또한 삭제하는 한편, 정원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증원함으로써 수사처수사관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수사 전문성을 축적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를 “공무원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을 “정년은”으로 한다.

3. 그 밖에 수사처규칙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수사처 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20명 이내로 한다”를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른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복무했던 사람이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소속 기관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수 및 대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생 략) 2. <u>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u>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u>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u>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u>40명 이내로 한다.</u>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u>6년</u>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u>정년은 60세로 한다.</u>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생 략)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공무원으로서</u>----- ----- 3. <u>그 밖에 수사처규칙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u>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u>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한다.</u> ③ -----정년은----- -----.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u>20명 이내로 한다.</u> 제12조(보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② ----- <u>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u> 제12조(보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다른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복무했던 사람이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소속 기관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수 및 대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u>
--	---